

사법통역 교육에 관한 실행연구: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 운영 사례

이 지 은
(이화여대)

1. 서론

사법통역은 인권을 포함한 개인의 법률적인 권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국어를 구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법 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입장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절차를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법통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법통역인¹⁾에 대한 자격검증 및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법통역인들의 전문성 부족, 사법통역 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

1) 사법기관에서 통역사가 아닌 통역인 (일반적으로 법원이 선정한 통역인력에 대한 호칭) 또는 통역자 (정식으로 법원이 선정하지 않은 통역인력에 대한 호칭)로 칭하는 관행 역시 사법통역인으로 활동하는 인력 중에 통역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통역과 번역의 부정확성과 통역인의 중립성을 포함한 윤리의식 부족 등의 문제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김진아 외 2008; 김한식 외 2008; Lee 2010; 이지은 2011, 2012a, 2012b; 이지은 외 2013).

사법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법원, 경찰, 검찰, 법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통역인을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수한 전국 법원에 등록된 통역인 숫자는 2013년 초 기준으로 28개 언어 1,290명으로 집계되며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28개 언어 964명으로 추정된다(이지은 외 2013:31). 전국 검찰에 등록된 통역인 숫자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12년 11월말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등록된 통역인 숫자는 104명으로(안성훈, 이지은 2012:35) 적어도 수백 명이 전국 검찰청에서 통역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경찰청 외사과 제공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으로 각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경찰 통역인력 중 민간인 통역인은 3,057명에 달한다. 일견 사법통역인력이 숫자적으로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가용인력은 부족하며, 사법기관의 통역인 운영제도에 개선할 여지가 많다(이지은 외 2013:83-84). 각 지역 사법기관별로 통역인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하면서 관할 지역 내에서도 사법기관과 통역인 명단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인력풀을 운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편이다. 통역인 선정 기준도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통역인들에 대한 자격심사가 학력과 이력 위주의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져서 통역기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다루는 사법통역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통역기술뿐만 아니라 법률용어와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지식 및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법통역인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법통역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법원의 경우,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통역인으로 선발한 인원에 대하여 소송절차 등에 관한 약간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온 정도이며,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법원도 다수다. 경찰과 검찰 역시 이렇다 할 통역인 교육은 없다. 통역학자들이 국내 사법통역인 자격제도 및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눈에 띄는 제도개선은 없었다(김진아 외 2008; 김한식 외 2008; 정혜연 2009; 이지은 2012a 등).

한편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사법통역 교육도 미진하다. 2012년까지 한국의

대 통번역대학원 박사과정에 법정통역 연구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국내 통역전문교육기관에 의한 사법통역 실무교육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전문통역사 교육을 위한 석사과정은 비즈니스 통역을 포함한 국제회의 통역 교육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법률관련 통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커뮤니티 통역에 해당하는 사법통역 교육은 이뤄지기 어렵다. 한편 전문통역교육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외국어 통역교육에만 제한되어 있어 통역교육을 받고 싶어도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소위 소수언어의 통역인들은 체계적인 통역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교육과정으로 사법통역인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서 적절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통역인 교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통역교육기관이 사법통역인 교육에 앞장 설 때 사법통역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사법통역 교육 석사과정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을 개설하였다. 본 과정은 여러 면에서 혁신적이다. 국내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개설한 석사과정으로서 특정언어별 수업이 아닌 언어통합(non-language specific) 통역수업이라는 점,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사법통역인 교육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본고는 2013년 3월 국내 최초로 개설한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 운영에 대한 실험연구(action research)를 다룬다. 교육과정 개발과 그 운영에 대해 검토해봄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본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연구란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 내지 해결하기 위한 계획(대처방안)을 수립한 후 실행 효과를 관찰하고,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순환형 사이클을 이룬다(그림 1 참조). 교육분야의 실험연구를 예로 들자면, 교사들이 교육 현장 즉, 교실 수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성찰적 실무(reflective practice)를 수행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실수업과 교육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Ferrance 2000; Parsons & Brown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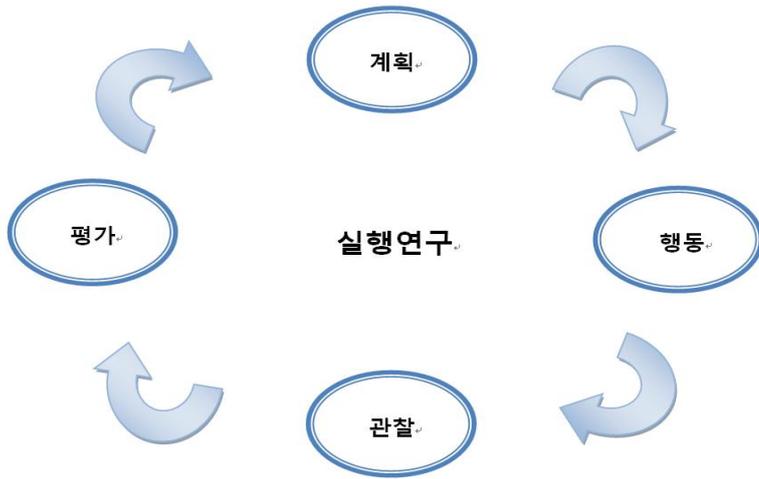


그림 1. 실행연구의 기본 모형

본 연구의 경우에는 국내 사법통역 현황과 실태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국 실정에 맞는 사법통역 교육모델을 개발(계획)하고, 제 1기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 운영을 마치고(실천/행동), 이를 평가해봄으로써(관찰,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다룬다. 특수한 교육과정 개발에 실행연구가 필요한 측면도 있었고, 필자가 본 제 1기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 설계와 운영을 담당하였으므로 자기성찰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차기 과정 운영을 계획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사법통역 교육과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 간략히 다룬 후 제 1기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함으로써 교육대상자들의 만족도와 의견을 조사하고, 수강생들뿐 아니라 교강사 피드백을 토대로 교육과정과 교육 효과에 대해 고찰한 후 차기 교육과정 계획을 도출하고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2. 사법통역 교육

사법통역 교육은 교육목적, 교육주체와 교육 대상자, 교육 기간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 내지 정규 교육과정이나, 비정규 교육과정이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이 사법통역사 인증제도와 연계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다. 교육기간으로 볼 때 정규 교육과정은 대부분 중·장기인데 비해 비정규 과정은 단기 과정이 많다. 해외 사례를 보면 통역교육기관이 아닌 통역인증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몇 시간에서부터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교육 과정이 많다. 교육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통역인으로 활동하기 전 단계에 시행되는 교육과 통역인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보수 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 언급한 몇 가지 기준을 토대로 사법통역 교육 유형을 분류하자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사법통역 교육 유형

사법통역 교육	기준	분류
	교육 주체	통역교육기관(대학, 기타 교육기관) 주관/비주관
	교육과정 성격	비정규/정규 교육과정
	교육 시점	사법 통역인 선정 전/후
	교육 대상자	통역인이 되고자 하는 교육생/현역 통역인
	교육기간	장기/단기

국내 사법통역제도 개선방안으로 통역인 교육을 강조한 이지은 외 (2013:403-404)는 현 제도의 소폭 개선을 꾀하는 것에서부터 전문사법통역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교육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사법기관 전체에 적용시켜보면 현재와 같이 사법기관별로 선정된 통역인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통역인 교육을 실시하는 안과 범 사법기관 차원에서 통역인 교육을 실시하는 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단기 교육보다 일정 기간에 걸친 교육이 전문성 함양에 효과적이며, 이 경우 법원을 포함한 사법기관들이 교육기관에 통역인 위탁교육을 의뢰하거나 통역교육기관이

교육 주체가 되어 사법통역인을 교육하고,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통역인을 사법기관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사법기관의 법률전문가들이 통역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통역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통역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187명의 법조인과 사법통역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2010년 설문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전문통역교육 이수를 사법통역인의 자격요건으로 꼽았다(이지은 2012:80). 사법통역인들의 법률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수차례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2012년 법원등록 통역인 67명을 대상으로 한 안성훈, 이지은(2012)의 설문조사에서는 85%의 응답자가 사법통역 교육을 받기 희망하였다. 2012년 4월에 필자가 참여한 법무부 난민통역인 교육 직후 피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통역교육 수요를 재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 64명 가운데 83%가 일회성이 아닌 통번역교육을 받고 싶다고 답하였고, 88%가 40시간 이상의 심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사법통역 교육과정의 개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요조사 기능을 하였다.

국내 상황에 맞는 사법통역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의 사법통역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유럽 각국의 다양한 사법통역 교육프로그램들을 참고하였다(Arqueros Consulting Group 2012; Niska 2004; Norström 2010; Piprek 2009; ÖVG D n.d. 등). 해외 사법통역 교육의 핵심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시간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도록 본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통역교육을 받지 않은 사법통역인들을 고려할 때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종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에 걸쳐 기술습득과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통역기술교육과 윤리적 측면에 대해 이해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고, 이미 통역인으로 활동하거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생업을 접고 낮시간에 교육을 받거나, 일정 기간 교육만 받고 있을 수 없으므로 야간 또는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72시간의 교육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필자가 제 1기 사법통역 전문가기초과정의 책임교수로 교육과정 개발과 설계를 담당하였는데 표 2.에 제 1기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²⁾

주 2회 수업 중 하루는 통역기술과 실습교육에 주력했고, 다른 하루는 통역

기초이론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법통역인의 역할과 원칙을 포함한 사법통역 이론과 법률 및 법의학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초 통역기술 과목은 본 대학원 출신 강사가 담당하였고, 학생들에게 언어별 피드백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통역사들이 교대로 통역 실습수업을 맡았다. 예를 들면 대화통역을 영어 통역사인 강사가 맡았다면, 순차통역은 중국어 통역사가 맡는 식으로 수업을 분담하였다. 사법통역 및 모의재판 수업은 사법통역 경험이 있는 필자가 담당하였다. 법률번역의 기초수업은 영어 번역사인 법률번역 전문가가 담당하였다. 그 외 모든 법률 수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하여 전·현직 판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담당하였다. 난민관련 교육에서는 UNHCR, 법무부, 난민법률지원단체의 공동강의가 있었고, 법의학 수업에는 법의학 교수가 강의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전문가들과 통역전문가들의 협력 하에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

표 2.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 교육일정

수요일 (3시간)	주	토요일 (3시간)
기초통역기술연습	1주	통역기초이론
대화통역I	2주	사법통역입문
대화통역II	3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순차통역I	4주	한국 사법제도 개요 및 형법의 주요 개념
순차통역II	5주	형사소송절차
지역I	6주	난민출입국 심사와 법률지원
지역II	7주	민법의 주요 개념과 민사소송
사법통역 I (수사통역)	8주	가사소송
사법통역 II (접견 통역)	9주	법률번역의 기초 I
사법통역 III (공판 통역)	10주	법률번역의 기초 II
모의재판 I	11주	법의학
모의재판 II	12주	세미나

- 2) 프로그램 명칭을 사법통역 전문가과정이 아닌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에서이다. 본 대학원의 교육이 사법통역사 자격증 제도를 대신할 수 없는데다 통역기술 교육내용도 순차통역에 국한하였고, 양방향 통역기술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시험이 없는 과정의 언어혼합반의 특성상 전문가 과정으로 간주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수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72시간의 교실수업 중 90% 이상 출석해야 할 뿐 아니라 10시간 현장실습과 과제 제출 요건을 지켜야 하였다. 현장실습은 사법통역 경험이 없는 수강생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및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한 견학과 참관 시간을 기록하여 보고서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미 사법통역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역인들은 통역확인서로 현장참관 또는 실습을 대체할 수 있었다. 수업 준비 또는 복습과 관련된 통역, 번역 과제를 자습용으로 제출하게 하였지만 이는 수료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아니었다. 법률 수업을 받은 후 한국어-외국어 법률용어 리스트를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수료요건 중 하나로 삼았다. 용어과제는 각자 법률이론 수업에서 다른 한국어 법률용어에 대한 개념과 대응어 표현을 각자 외국어로 찾아보고 앞으로 통번역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 세미나 시간에는 교육받은 내용을 되돌아보고, 현장실습 및 참관 경험과 함께 정리해볼 수 있도록 간단한 레포트를 발표, 제출하게 하였다. 22명이 입학하였지만 12주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총 18명이다.

사법통역 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12주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자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책임자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등록금을 정하기 어려웠다. 사법기관에서 지급하는 통역비가 매우 낮은 현실을 감안하고, 다문화 가정 출신자 등 다양한 경제계층이 사법통역 교육을 받고 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수준에서 등록금을 책정하였다. 수강생의 등록비만으로 운영할 경우 수강료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대학원 자체 재정지원과 외부 후원에 의존하기로 하고, 제 1기 수강료를 5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수업료에 대한 교육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차기 등록비 책정에 참고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호주 등 해외 각국에서 통역교육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에 제한되어 있어 사법통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언어의 통역사에 대한 공식 교육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언어를 불문하고 통합수업을 함으로써 소수언어 통역사 교육을 시키는 비정규 또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Mikkelson & Mintz 1997; Straker & Watts 2003; Slatyer 2006; Lai & Mulayim 2010 등). 국내에서도 소위 희귀언어로 간주되는 언어의 통역교육은 자체적으로는 개설되기 어렵기 때문에 언어통합 통역교육방식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교육하고 평가했는지에 관해 통역교수법에 대한 문헌

을 찾아보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통역수업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언어의 통역인을 함께 교육하다보니 한계도 있었다.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포함한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수료요건으로 총괄평가를 시행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할 경우에만 수료시킬 것인지 고민하였으나 몇 가지 이유로 형성평가만 실시하였다. 우선 국내 사법통역사 자격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법통역인의 교육도 본 교육과정 개설의 목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괄평가 결과로 수료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무리였다. 또한 언어 양방향 통역 평가가 쉽지 않았고, 시험 운영에 별도의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료를 결정하는 총괄평가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까지는 국내 최초로 개설한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과 교육과정 설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교육생들과 강사들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교육과정 수정 내지 개선 계획을 간단히 논한다.

3.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에 대한 평가

18명의 수료자는 모두 여성으로 통역전공 석사학위 소지자가 3명, 통역전공 석사 과정 재학생이 1명이었고, 결혼이주여성은 5명이 있었다. 마지막 수업일에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먼저 논하겠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의 연령과 사법통역 경험, 활동 계획,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자습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료자 18명 가운데 부분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도 있는데, 표본 크기가 작아 부분 응답자를 제외하지 않고 집계에 반영하였다. 문항마다 응답자 숫자(N)를 표기하였다. 응답률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하였다.

표 3. 연령

연령	수료자
	N=17
20대	24%(4)
30대	53%(9)
40대	18%(3)
50대	6%(1)
60대 이상	0%(0)

응답자 중 30대가 53%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두 번째로 많은 24%를 차지하였다(표 3. 참조). 40대가 18%, 50대는 6%였다. 60대 교육생도 있었으나 수료자격에 미달하여 본 설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표 4. 모국어

모국어	수료자
	N=18
한국어	78%(14)
외국어	22%(4)
기타	0%(0)

수료자들의 통역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노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였다. 영어 통역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어 통역인이 두 번째, 일어 통역인이 세 번째로 많았다. 모국어가 한국어라고 답한 사람이 78%, 모국어가 외국어인 사람이 22%였다(표 4. 참조).

표 5. 사법통역 활동 또는 경력

사법통역 활동 또는 경력	수료자
	N=17
사법기관에 등록되어서 사법통역 활동 중	24%(4)
등록되지 않았으나 사법통역 활동 중	18%(3)
사법통역경력 없음	47%(8)
통역경력 없음	6%(1)
기타	6%(1)

사법통역 활동 또는 경력에 관한 질문에서 사법통역 경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7%였다. 사법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서 사법통역인으로 활동 중인 응답자가 24%, 등록되지 않았으나 사법통역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18%였다. 전체적으로 42%는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사법통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어떠한 통역경력이 없는 응답자도 6%였다(표 5. 참조).

표 6. 수료 후 앞으로 활동 계획

활동 계획	수료자
	N=14
1년 내에 사법통역인으로 활동 희망	43%(6)
2-3년 내에 사법통역인으로 활동 희망	7%(1)
관심은 있으나 구체적 계획 없음	43%(6)
기타	7%(1)

수료 후 활동 계획에 대해 응답자 중 43%가 1년 내에 사법통역인으로 활동을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또 다른 43%가 관심은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다. 2-3년 내에 활동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7%, 기타 응답이 7% 있었다(표 6. 참조). 당장 사법통역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다른 일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표 7. 사법통역인으로 일하고 싶은 기관

사법통역인으로 일하고 싶은 기관	수료자
	N=56
법원	18%(10)
검찰	20%(11)
경찰	20%(11)
법무부	23%(13)
각종 법률지원단체	20%(11)
기타	0%(0)

수료생들은 법무부와 경찰, 그리고 법원의 통역료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싶은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통역요율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없었다. 법원의 통역료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지만 희망자가 더 많지 않았다. 사법통역인으로 활동하고 싶은 기관에 대한 질문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응답자가 23%, 검찰, 경찰, 각종 법률지원단체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 20%, 법원이 18%였다(표 7. 참조). 이러한 응답은 이들이 사법통역 교육을 받게 된 동기과 사법통역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금전적인 것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표 8.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에 등록하게 된 동기

등록 동기	수료자
	N=40
사법통역과 관련된 이론 및 법률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38%(15)
사법통역 실무를 배우고 싶어서	28%(11)
통역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20%(8)
언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15%(6)
기타	0%(0)

본 과정에 등록하게 된 동기로는 사법통역과 관련된 이론 및 법률지식을 배우고 싶다는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고, 사법통역 실무를 배우고 싶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8%, 통역기술을 배우고 싶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0%, 언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15%였다(표 8. 참조).

표 9.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수료자
	N=17
매우 만족	41%(7)
만족	59% (10)
보통	0%(0)
불만족	0%(0)
매우 불만족	0%(0)

설문조사결과 수료자들의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59%,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1%였다(표 9. 참조). 통역실습 수업과 이론 수업을 구분하여 개별 수업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본고에는 제시하지 않지만 통역실습 수업보다 이론 수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았다. 이론 수업 중 사법제도 개요 및 형사소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87%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이론 수업이 법의학 수업으로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가 83%였다.

수업과제와 수료요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수업과 관련된 준비 내용과 녹음 과제에 관해 매우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3%,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3%, 보통이라고 답한 수료자는 33%였다. 법률 용어 과제에 대해서도 호응도가 높았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선택한 응답자가 16명 가운데 63%, 매우 적절하다가 38%였다. 현장실습 및 참관 경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 16명 가운데 적절하다고 본 응답자가 44%, 매우 적절하다고 본 응답자가 31%,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3% 있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3% 있었다(표 10. 참조).

표 10. 현장참관 경험에 대한 의견

참여한 현장참관에 대한 의견	수료자
	N=16
매우 적절	31%(5)
적절	44%(7)
보통	13%(2)
부적절	0%(0)
매우 부적절	0%(0)
잘 모르겠다	13%(2)

사법통역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10시간 현장실습과 참관을 마쳐야 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 검찰청, 법원 세 곳에 대한 견학프로그램을 섭외하고, 통역이 참여하는 공판과 참여재판에 관한 정보를 공지해주었다. 하지만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직업이 있는 교육생들은 현장참관에 모두 참여할

수 없었고, 이 경우에는 대체과제를 제출하게 하였다. 현장견학과 실습 등 10시간 현장실습을 수료요건으로 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50%, 보통이라는 의견이 25%,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13%, 잘 모르겠다는 의견과 기타 의견이 각각 6%였다.

표 11. 교육기간 동안 평균 통역 자습 및 그룹 스터디 시간

평균 통역 자습 및 그룹 스터디 시간	수료자
	N=17
주당 1시간 미만	29%(5)
주당 1시간-3시간	35% (6)
주당 3시간-6시간	18%(3)
주당 7시간-9시간	0%(0)
주당 10시간 이상	18%(3)
기타	0%(0)

많은 시간을 연습(*deliberate practice*)에 투자하여야 높은 수준의 통역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Ericsson 2000; Moser-Mercer 2000) 수업 관련 과제도 내어주고, 단계별 기술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술습득을 유도하였으나 교육생들의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시간이 부족한 까닭인지 자율 학습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생들의 자습과 그룹 스터디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교육기간 동안 평균 통역 자습 및 그룹 스터디 시간이 주당 1시간-3시간이 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당 1시간 미만이 29%, 주당 3시간-6시간과 주당 10시간 이상이 각각 18%였다(표 11. 참조). 통역연습 부족은 교육 효과를 최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습을 포함하여 통역연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표 12. 자습 및 그룹 스터디 시간에 관한 의견

자습 및 그룹 스터디 시간이 본인의 통역기술과 지식을 향상하는 데 충분했는가?	수료자
	N=14
매우 충분	7%(1)
충분	14% (2)
보통	36%(5)
불충분	29%(4)
매우 불충분	14%(2)
잘 모르겠다	0%(0)

스터디 시간이 자신의 통역기술과 지식을 향상하기 위해 충분하였는지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자습과 그룹 스터디 시간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느낀 응답자가 43%였다(표 12. 참조). 그렇지만 주당 3시간 미만을 연습 시간에 사용하고도 36%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14%가 충분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율학습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교육 목표를 주지시키고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총괄평가가 없었던 것도 연습을 게을리 한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차기 교육에는 평가를 강화하고 자기기준(ipsative) 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13. 수강료 수준에 대한 의견

수강료 수준	수료자
	N=15
매우 높다	0%(0)
높다	7%(1)
적당/보통	87%(13)
낮다	7%(1)
매우 낮다	0%(0)

교육기회가 없는 사법통역인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통역기술과 직업윤리의식을 갖춘 통역인을 양성하겠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에서 출발한 공익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법통역 비학위과정을 개설하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은

수강료였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사법기관의 후원을 받기 힘들고, 따라서 개인 후원과 대학원 내부 지원에만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너무 낮게 책정해도 운영비용 마련에 애로가 예상되었다. 충분히 낮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은 비공식적으로는 많은 수강생들이 저렴한 수강료로 어떻게 운영하느냐며 수업료가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말했지만, 정작 설문조사에서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고, 심지어 높다고 평가한 수강생도 한 명 있었다(표 13. 참조). 비공식적인 학생들의 코멘트에 의하면,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이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의도를 간파하고, 앞으로 인상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달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상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객관식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하였다. 이제부터는 제1기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을 마친 수료자들과 통역과목 강사들의 피드백을 분석함으로써 본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제2기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참고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마지막 날 세미나 수업시간에는 교육생들이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레포트를 구술발표하고 제출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통해 얻어진 피드백은 객관식 설문조사를 통해 입수하기 어려운 질적 자료 역할을 하였다. 한편 강사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통역능력을 포함하여 수업내용에 대해 수업 후 간단히 정리하여 프로그램 책임자를 포함한 다른 강사들에게 전체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강사들과 구두로 또는 이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을 기초로 강사들의 피드백을 정리하였다.

<학생들의 피드백>

설문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문적인 통역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교육생들은 통역기술 수업이 어려웠지만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의 전문적인 통역교육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다문화사회 사법제도에 필요한 사법통역 교육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판단된다.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일부 교육생들의 피드백을 아

래에 일부 인용하였다.

“훌륭한 내용을 압축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원래 목적했던 바대로 사법분야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실제 사법통역을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금번 과정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법 절차 및 법에 대해 큰 틀과 기본 방향을 다지는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한다. 다져진 기본을 바탕으로 사법통역의 방향을 잡아가고 양질의 통역을 제공하는 부분은 통역사들에게 남겨진 몫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법통역전문가과정을 수강하면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사법통역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훈련하는 방법과 법률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법관련 전문교육은 처음 받아보았기에 이제 한 발 뺀다고 생각하며 교육기간이 너무 짧아 이어지는 교육이 있다면 계속 배우나가고 싶다.”

“진심으로 ‘이보다 더 알찰 수 없는 커리큘럼’ 이었고 기대한 이상으로 강사진 분들도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쳐 주시고 노하우도 공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법과 통, 번역이라는 분야의 교집합 지점인 사법통역이야 말로 그간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문화와 사람의 이동 및 다른 문화와 사람과의 조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 역할인 만큼 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 및 양성 역시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설된 ‘사법 통역의 기초’ 과정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며 이런 뜻 깊은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법이라는 분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사법 통역 실전 경험이 없지만, 지금까지 쌓은 것들을 잘 숙성시켜서 꼭 실전에 적용해보도록 하겠다.”

“이대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은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섞은 과정이라 생각된다. 특히 토요일 이론교육 과정은 사법 통역의 큰 그림과 틀을 잡는데 길잡이가 되는 과정이었고, 법원 및 검/경찰청 견학은 낯선 장소에 대한 생소함을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 모의재판 통역 연습을 통해 실제 법정에서의 통역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각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통역기초 이론은 대학원 다닐 때 배웠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다시 한번 통역 프로세스를 도식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관련한 강의는 실제 법률번역에서도 많은 이슈가 제기되는 부분이라 주의 깊게 들었다. 통역사가 법정통역 시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에 관해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법원의 체계와 각 법원의 역할을 배웠다. 평상시 궁금했던 형사절차의 흐름과 실제 범죄 현황을 알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 원론적 지식이 아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회복적 사법이라는 새로운 동향을 알 수 있어 거시적으로 형사소송 관련 사법체계를 볼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생들에게 법의학을 포함한 다섯 차례의 법률수업 이후 수업 내용과 관련된 한국어 용어리스트를 해당 외국어로 설명하고, 등가 표현을 찾아 제출하도록 과제를 내주었다. 영어의 경우, 프로그램 책임 교수가 영어전공이라 약간의 전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지만 기타 언어는 온전히 학생들의 리서치에 맡긴 터라 용어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육생들은 용어과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였으나 끝내고 보니 유익했다고 평가하였다. 법률용어 정리과제에 대해 63%가 적절하다, 38%가 매우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특히 전문적인 통역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들은 석사과정에서 접하지 못한 교육내용과 석사과정에서 자율에 맡겼던 부분까지 용어집 작성가이드를 받은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였다. 아래 통역 비전공자와 전공자들의 피드백을 차례로 제시한다.

“교수님께서 내주신 다섯 차례의 용어과제는 작성하는 데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법률 번역을 할 때가 왔을 때 해둔 과제를 꺼내 참고하며 번역 할 수 있어서 번역을 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그 때가 되어서야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과제를 하며 영어와 한국어의 법률 용어에 차이가 있고, 각각의 언어에만 있는 용어들이 더러 있다는 것도 찾아보며 알게 되었다.“

“통대원을 다닐 때 용어 정리는 만약 '경제' 라는 주제가 주어지면 그 큰 틀 안에서 내가 방향을 잡고, 나를 정리를 해나갔다. 처음에는 막연한 느낌이 없지 않았고, 용어 정리가 숙제를 위한 형식으로 치우칠 때도 간혹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업에서는 먼저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개념을 알게 된 상태에서 용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같은 언어권별 별도의 세미나 또는 스터디 시간을 통해 용어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정확한 등가를 찾는 데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듯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장실습과 참관에 대해서도 사법제도와 사법절차에 대해 실제 이해를 높이는 데 유익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통역인이 통역하는 수사과정 또는 접견 참관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어렵고, 공판에서 통역이 제공될지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역이 이뤄지는 현장을 참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도 있었다. 아래에 일부 발표 내용을 인용한다.

“현장실습 또한 사법제도 및 소송과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형법 수업을 듣고 나서 형사재판을 참관하니, 새로 배운 형법 용어가 등장할 때 반가웠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뿌듯했다. 이전에는 뉴스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불구속 입건 등 법률과 관련된 어려운 한자어가 나올 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 했는데, 배우고 나니 이러한 개념들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법원 견학은 유익한 경험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과 친숙해 질 수 있고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 되어가는 거 같아 만족스러웠다. (중략) 모의재판을 하면서 실제 재판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재판진행과정을 생생히 전달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재판장님의 강의는 미래 통역사로서의 분야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수강료와 함께 언어합반 통역수업운영이 가장 고민스러웠다. 국내에서 단기통역교육은 언어별 구분 없이 시도된 적이 있었지만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비학위과정에서나 정규 교육과정에서 언어합반 통역수

업은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바이다. 동일 언어 교육생이 10명 이상일 경우 분반을 계획했으나 10명 이상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등록금이 낮아 언어합반이 여러모로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언어합반 수업에 관한 강사들과 교육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교육효과와 교수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아래 제시한 바와 같이 수강생들은 대부분 다른 언어권 통역인들과 같이 수업한 것을 새로운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보다 효과적인 실습교육을 위해 언어분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일부 교육생들의 발표 내용을 아래에 인용한다.

“여러 언어 구사자가 함께 수업 받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고, 영어 외에도 조금 구사할 줄 아는 다른 언어의 경우 통역을 들으려 노력도 해보았다. 토요일 수업에서 배운 법률 통역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은 이 과정이 아니라면 비전공자로서 접하지 못했을 알찬 내용들이 많아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리한 용어리스트도 실제 통번역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여러 언어구사자들과 함께 수업하며 각 언어마다 법정통역을 하며 부딪히는 문화적 어려움과 특수한 문제들을 알게 된 것이 이번 과정의 수확이라 하겠다.”

“다른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서 사법 통역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쌓는 데 더 많이 치중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교양 수업처럼 가볍게 과정을 마치는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통역 수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 언어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연습이 가능했고 긴장감이 넘쳐흐르기도 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서로 다른 언어들이 모여 있어, 통역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B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의 수업진행방식이 아쉬웠다. 언어별로 분반을 해서, 그 나라의 법 제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비교와 분석을,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다양한 언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모여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전공언어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은 이후 2기, 3기부터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내외부의 후원과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지금의 등록금 구조로는 언어분반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언어별 분반수업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현재 수강료의 3배 이상의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수업료를 현실화하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소수만 교육을 받게 되어 당초 과정 개설 취지인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사법통역 인력양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지원자 인터뷰 당시부터 언어 분반을 하지 않고 수업한다고 안내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교육생 한 명은 1주 만에 자퇴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편 전체 합반 통역수업을 하면서도 언어별 그룹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동일 언어 간의 연습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통언어 교육생이 최소한 2명을 확보한 후 입학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동일 언어 2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적용할 경우 통역인이 극히 적은 소수언어 통역인은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소수언어의 경우 현재와 같은 언어합반운영이 불가피하다.

<강사들의 피드백>

통역과 번역 실습 교육은 프로그램 책임자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5명의 교강사가 참여하였다. 통역수업 시 강의의 연속성과 수업준비를 위해 담당 강사가 수업이 끝나면 수업진행과 교재, 학생들의 수행능력 수준, 기타 특기할 사항을 전체 강사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었다.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구사력 등을 포함하여 교육생들의 통역 수준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게 하고, 수업 내용과 과제에 대해 공유하게 하였다. 사법통역 경험이 없는 강사들과 협의하면서 수업 교재를 선정하는 소통의 채널이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교육과정 개설 전에 강사 워크숍을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이뤄지고 개별 강사의 통역 수업준비에 강사진 간의 협업, 그리고 프로그램 책임자와 개별 강사

간의 조율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언어가 다른 통역사이자 강사가 수업을 돌아가면서 진행하였지만 참여 언어합반 수업방식이기 때문에 통역수업 강사는 대다수 교육생들의 통역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언어 양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없는 것이 수업 운영이나 교육 효과 측면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였다. 실제로 강사들도 여러 언어가 섞여 있어 강의하기 힘든 점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재미있었다는 평이었다. 영어 전공인 법률번역 강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다양한 언어에 대한 번역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이 많았으나,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생각보다 매우 뜨거웠다. 하지만 언어별 토의는 아무래도 깊이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분명 있다. 붙어는 영어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관련 영어 용어나 표현을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어, 중국어를 포함한 나머지 언어는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함께 논의하면 좋을 번역원칙 등에 대해 토론하는 정도였다. 언어별로 논의할 시간을 주고 리뷰분을 함께 보고 발표하도록 해서 같은 언어권 내에서는 구체적인 표현관련 논의들도 서로 공유해보았다. 다음에는 다른 언어 번역강사가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언어합반 수업도 쉽지 않은 수업환경이었지만 공통언어인 한국어 수준의 편차가 큰 것도 수업진행과 학습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모국어가 한국어인 경우, 입학조건으로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였고,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 일정 수준 이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험성적이 없는 경우에 통역업무를 하고 있거나 한국어 인터뷰를 통해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학을 허가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교육생들의 한글 읽기, 쓰기 능력과 사법통번역에서 필요한 언어사용역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통역 기술 수업을 담당한 강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업료 인상요인이 되겠지만 별도의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외국인 교육생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전후에 걸쳐 한국어 능력 강화가 필요하며, 모든 교육생들이 다양한 길이의 텍스트를 다룰 수 있도록 통역 기술습득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으

로 강사들의 피드백을 요약할 수 있다. 아래 강사들의 코멘트를 인용한다.

“순차통역 텍스트 길이가 길어지니 외국분들이 어려워하셨다. 특히 한국어 용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다. 한국어가 많이 부족한데 특히 어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국어 발음도 수정이 요구된다. 나머지 학생들은 논리구조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에서 많이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다.”

“노트테이킹과 순차통역 수업 후 몇 주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문장 일대일 대응 통역에 익숙하였고, 두 세 문장 이상 길이의 텍스트는 정확하게 통역하는 데 큰 어려움을 보였다. 교육생들의 연습 부족과 수사기관을 포함한 일반 통역현장에서 주로 한두 문장 길이의 통역에 길들여진 까닭인 것 같다. 다양한 길이의 원문을 잘 기억하고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의 부담감을 극복하고, 보다 자율적 학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강생들에게 공통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전체 통역수업에서는 한국어-외국어-한국어 또는 외국어-한국어-외국어 순서로 한국어를 축으로 한 릴레이통역 연습을 많이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릴레이통역 연습에 대한 호응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점차 언어별로 소그룹을 만들어 각자 언어로 통역하는 비중을 늘렸다. 소그룹별 연습시간에는 해당 언어 사용자가 한 명뿐이었던 러시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수강생끼리 한 그룹을 만들어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통역연습을 하게 하였다.

사법통역 교육과정을 개설할 취지에는 기존의 사법통역인들에 대한 교육이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통역인들의 현장 경험담은 사법통역 경험이 없는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교육생의 사법통역 실무경험이 많을수록 사법통역인의 역할에 대한 원칙적인 교육 내용을 잘 수용하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³⁾ 경찰과 법원에서 활동해온 교육생들은 원칙을 알게 된 것은

3) 제 1기 과정을 수료하지는 못했지만 사법통역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교육생은 수사관 출신이라서 더욱 그러한지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이 교육생은 사법통역의 원칙보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편의 및 효율성을 위한 수사관 보조 역할을 강조하였고, 또 다른 경찰 통역 경험이 있는 다른 수료생도 경찰의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 피의자의 거짓말 등으로 신문진행이 순조롭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좋지만 교육받은 사법통역의 원칙과 실제 현장 간의 괴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을 나누었는데 이러한 코멘트는 사법통역 경험이 없는 교육생들에게는 현장에서 받는 압력과 기대에 대해 미리 알고 대처할 준비를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사법기관에서 통역인 활용원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통역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된 어려움은 사법통역 서비스 이용자들 즉 사법기관 종사자와 법조인들과 통역인들의 교육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국내 최초로 개설한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의 기획,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실험연구를 기초로 한다. 선행연구를 포함한 예비 수요조사 와 국내 단기 사법통역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한 본 교육과정은 통역기술 및 윤리 교육과 법률 교육이라는 두 축을 기초로 하여 사법통역 교육의 핵심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현장참관을 포함한 통역기술 교육과 분야별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률관련 교육,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용어 과제 및 보고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나 교육생들의 입장에서 모두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교육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본 과정 운영은 성공적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교육과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적정한 수업료 수준을 정하고 외부기관의 후원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으며, 강사교육과 언어혼합반 수업운영, 자기기준 평가 및 총괄평가 강화 등이 차기 교육과정 계획 시 보완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실험연구의 특성상 변화를 도입한 후 효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다시 조치를 취하는 주기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다음 주기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다. 비록 제 2기 개설을 통한 개선책의 효과를 검토하지 않은 단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으나 체계적인 사법통역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속에서 한국 상황에 적절한 교육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통역인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제 1기 교육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평가를 통한 성과와 개선책을 되돌아본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언어합반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법 개발과 평가에 대한 후속 연구 진행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2단계 실험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므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법통역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을 사법기관에서 우대함으로써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본 비학위 과정과 같이 사법통역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취업보장이나 우대와 같은 혜택이 없다. 법무부와 법원을 포함한 유관기관들과 법률 단체들이 사법통역인 교육 및 양성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본 교육과정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보다 많은 사법통역인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사법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언어장벽을 해소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절차를 지켜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아 (2008)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11(2): 21-37.
- 김진아, 정혜연, 이상빈 (2008) 『국내 법정통역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 방향 모색』, 서울: 법원행정처.
- 김한식, 주진국, 정정림 (2008) 「대검찰청 연구과제 보고서」, 『외국인을 위한 수사·공판서류 번역 및 통역 실태 조사 연구』, 서울: 대검찰청.
- 법원행정처 (2009) 『법정통역인편람』, 서울: 법원행정처.
- 안성훈, 이지은 (2012)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지은 (2011) 「법정통역 담화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회 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1-198.
- _____ (2012a) 『다문화사회의 사법통역』, 서울: 집문당.
- _____ (2012b) 「난민재판 통역의 질에 대한 고찰: 통역인의 역할에 관한 사례

- 연구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1): 209-232.
- _____ (준비중) 사법통역에 관한 경찰관 인식조사 연구.
- 이지은, 장원경, 김재련 (2013)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 행정처 용역연구과제 보고서』.
- 정혜연 (2009) 「법정통번역교육」, 『번역학연구』 10(2): 181-205.
- Arqueros Consulting Group (2012) Training provision for public servic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in England. <https://www.llas.ac.uk/news/6673>(2013년 5월 17일자 검색).
- Ericsson, K. A. (2000) Expertise in interpreting, *Interpreting* 5(2): 187-220.
- Ferrance, E. (2000) *Action Research*, Providence, RI: Brown University.
- Heighm, J. & Croker, R. A. (2009) (eds.), *Qualitative Research in Applied Linguis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ai, M. & Mulayim, S. (2010) Training Refugees to Become Interpreters for Refuge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Research* 2(1): 48-60.
- Lee, J. (2010) A case study of an untrained interpreter's court interpreting, 『번역학연구』 11(1): 339-59.
- Mikkelson, H. & Mintz, H. (1997) Orientation workshops for interpreters of all language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deal world and reality. In S. Carr, R. Roberts, A. Dufour & D. Steyn (eds.), *The Critical Link: Interpreters in the Communit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55-63.
- Moser-Mercer, B., Frauenfelder, U.H., Casado, B., & Künzli, A. (2000) Searching to define expertise in interpreting. In K. Hyltenstam & B. Englund-Dimitrova (eds.), *Language Processing and Interpret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21.
- Niska, H. (2004) From helpers to professionals: Training of community interpreters in Sweden. In Wadensjö, C., Dimitrova B. E. & Nilsson, A. L. (eds.), *The Critical Link 4 Professionalisation of Interpreting in the Community*, Amsterdam: John Benjamins, 297-310.

- Norström, E. (2010) Community interpreting in Sweden and its significance to guaranteeing legal and medical security. *Cultural Diversity, Multilingualism and Ethnic Minorities in Sweden, International Conference*, September 2-3, 2009, Stockholm, Sweden, (Revue International Webjournal, 2010), <http://noomix.fr/sens-public/spip.php?article781&lang=fr>(2013년 5월 17일자 검색).
- ÖVGD (n.d.) <http://www.gerichtsdolmetscher.at/index.php?lang=en>(2013년 5월 17일자 검색)
- Parsons, R. D. & Brown, K. S. (2002) *Teacher as Reflective Practitioner and Action Researcher*,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Piprek, H. (2009) The function of a court interpreter and/or translator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preconditions, qualifications, compensations and legal basis. *EULITA European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ssociation*, November 26-28, 2009, Antwerp, Belgium, <http://www.eulita.eu/sites/default/files/The%20function%20of%20a%20court%20interpreter%20and-or%20translator%20in%20Germany.pdf> (2013년 5월 17일자 검색).
- Slatyer, H. (2006) Researching curriculum innovation in interpreter education: the case of initial training for novice interpreters in languages of limited diffusion. In C. Roy (ed.), *New Approaches to Interpreter Educatio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47-63.
- Straker, J. & Watts, H. (2003) "Fit for Purpose?": Interpreter training for students from refugee background. In L. Brunette, G. Bastin, A. Dufour & D. Steyn (eds.), *The Critical Link 3: Interpreters in the Communit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63 - 176.

[Abstract]

**Action research on legal interpreter training:
A case study of Ewha GSTI legal interpreter certificate program**

Lee, Jie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action research on legal interpreter training offered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Ewha GSTI). In order to take a lead in improving legal interpreting services in South Korea, Ewha GSTI has embarked upon developing and running a legal interpreter training program. The launch of the twelve week certificate program, the first of its kind in South Korea, is significant in many aspects. First, it is the first non-degree training program in legal interpreting provided by a graduate school in South Korea. Second, it is a non-language specific training program, which also breaks new ground in formal interpreter education in South Korea. Third, it is a non-profit training program which was designed to put into practice the University's vision of *Non nobis solum* (not for ourselves alone). This paper begins with discussing the background of the newly launched legal interpreter certificate program and focuses on curriculum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program by teachers and trainees. The program evaluation is largely based on feedbacks from eighteen graduates and five trainers, including the author's reflection. Based on such findings, this paper discusses suggestions for the next round of program development and planning, including enhancing teaching methods for a non-language specific class and further developing training models for legal interpreters most appropriate in the South Korean context.

▶ Key Words: action research, curriculum development, evaluation, Ewha GSTI, legal interpreter certificate program

이지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 부교수

jieun.lee@ewha.ac.kr

관심분야: 사법통역, 통번역교육, 담화분석연구

논문투고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2일